PTTT Review

707호 2022.1.21.(금)





🥼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http://www.kfcc.or.kr, 연락처: 02-771-7936 주소: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Review

CONTENTS

■ 업계 동향

- ▶ HJ중공업, 중대 산업재해 근절 선포식
- ▶ 호반건설, 설 앞두고 협력사에 공사대금 1447억원 현금 지급
- ▶ 포스코건설, 설 맞아 중소협력사 거래대금 670억 조기지급
- ▶ KCC건설, 연탄 4만장 부산연탄은행에 기부
- ▶ 현대건설, 'USA 굿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 건설경제 일반동향

- ▶ 지난해 주택분양실적 정부 전망치에 큰 폭 미달
- ▶ 홀대 받던 SOC, 경제 동력으로 위상 변화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정부, '건설안전 관련 3법' 정비 추진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2.1.15(토)~2022.1.21(금)>

제707호 2022.1.21(금)

<업계 동향>

◈ HJ중공업, 중대 산업재해 근절 선포식

- 1워20일 HJ중공업은 전국 건설 현장 과 영도조선소 등에서 홍문기 대표와 임직원, 협력업체 근로자 등이 참석 한 가운데 2022년을 '안전보건 체계 구축의 해'로 정하고 중대 '중대재해 근절 선포식'을 열었음
- ○이날 대구 해모로 스퀘어 이스트와 웨스트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중대산업재해 근절 선포식에 참석한 HJ중공업 임직원들

- 홍문기 대표는 회사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기본과 원칙준수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문화 조성'으로 정하고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충실 이행 ▲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 철저한 법규 준수 ▲ 종사자 의견을 반영한 유해·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지속적 개선 ▲ 종사자 안전보건 경영 참여와 개선방안 이행 등을 당부하였음
- ○한편, HJ중공업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매우 우수'등급을 받았고, 지난 12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제29회 안전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받았음

◈ 호반건설, 설 앞두고 협력사에 공사대금 1447억원 현금 지급

- ○1월20일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설 명절을 앞두고 470여개 협력사에 공사대금 1447억원을 현금으로 지 급했다고 밝혔음
- ○이번 대금 지급은 코로나19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었 으며, 올해부터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매달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일도 앞당기기로 하 였음



우수협력업체 시상식에서 협력업체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한편 호반그룹은 지난 1월18일에는 우수협력업체 시상식을 열어 100여개 협력사에 총 13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협력사들과의 상생과 동 반성장에 힘쓰고 있음

◈ 포스코건설, 설 맞아 중소협력사 거래대금 670억 조기지급

- 1월20일 포스코건설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7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음
- 포스코건설은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1월28일부터 2월13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중 670억원을 설 명절 5



- 일 전인 1월27일에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하고 있는 약 620여 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
- ○포스코건설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이번 거래대 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 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한편,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음

◈ KCC건설, 연탄 4만장 부산연탄은행에 기부

- ○1월18일 KCC건설은 지역사회 공 헌 활동의 일환으로 연탄 4만장을 부산연탄은행에 기부하였음
- KCC건설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9년째 연탄 나눔을 통해 소외계층 돕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 난 9년간 기부한 연탄의 수량은 총 33만 장에 이르고 있음
- ○이번에 기부된 연탄은 한파에도 보일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부산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전달 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



부산연탄은행에 연탄을 기부한 KCC건설

기 불황의 여파로 연탄 기부가 줄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

로 보임

○ KCC건설은 앞으로도 사랑의 연탄나눔과 성금기탁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현대건설, 'USA 굿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 1월18일 현대건설은 미국에서 개최된 '2021 USA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서울 서초구에 시공한 '디에이치 라클 라스' 단지 내 예술 시설물인 '클라우 드 워크 파빌리온'으로 본상을 수상했 다고 밝혔음
- 'USA 굿 디자인 어워드'는 1950년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디자인 공모전으로, 미국 시카고 아테네움 건 축 디자인 박물관과 유럽 건축·예술· 디자인·도시연구센터가 협력해 매년 최고의 디자인 상품을 선정하고 있음



디에이치 라클라스 단지 내 설치된 예술 시설물 '클라우드 워크 파빌리온'

-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패턴 디자이너 카럴 마르턴스와 한국 건축가 최장원의 협업으로 탄생한 '클라우드 워크 파빌리온'은 구름을 형상화한 모양으로 관상용 조각 작품이면 서 쉼터의 기능을 하고 있음
- 현대건설은 이번 공모전에서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수상에 성공하였으며, 이 작품 은 지난해 미국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프로덕트 어워드에서도 수상하는 등 국제 디 자인상 2관왕을 달성하였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2.1.15(토)~2022.1.21(금)>

제707호 2022.1.21(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 지난해 주택분양실적 정부 전망치에 큰 폭 미달

- ○지난해 주택 분양이 최대 51만가구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달리 실제로는 76% 수준만 분양이 된 것으로 파악됨
-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으로 정부가 주택 구매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애초부터 현실성이 낮은 전망치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비난

<주요내용>

□ 현황

-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주택분양실적은 28만 9000가구이며, 사전청약 물량에 지난해 12월 한달간 분양실적을 더하면 지난해 전체 주택 분양 실적은 38만8000가구로 추정
- 이 같은 분양실적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연 단위로는 가장 많은 분양이 지만, 지난해 정부가 내놨던 최대 51만가구 분양 전망과 비교하면 76% 수준에 그 치는 실적
- 지난해 5월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민간에서 예상한 주택 분양 최대치인 39만1000가구와 공공분양 9만2000가구, 사전청약 3만가구를 더해 연간 분양물량이 최대 50만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연도별 주택분양 실적>

(단위 ; 만가구)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분양실적	52.5	56.9	31.1	28.2	31.4	34.9	38.8	46.0

자료 : 국토교통부(사전청약 포함, 2021, 2022는 예상치)

-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분양 계획 39만1000가구 가운데 실제 분양은 약 72%인 28만10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정부의 분양 전망과 실제 실적 에 큰 차이가 발생

□ 시사점

- 민간에서 발표하는 분양계획과 실제 분양실적 사이에는 매년 큰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택 구매 심리를 누르기 위해 애초에 달성되기 어려운 비현실적 인 공급계획을 제시했다는 평가

- 실제 부동산114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의 민간 분양계획은 41만7000가구였지만 실제 실적은 23만5000가구였고, 2019년에는 분양계획은 38만6000가구였지만 실제 분양실적은 25만3000가구, 2020년에도 32만5000가구가 분양계획을 집계됐지만 실제로는 29만7000가구만 분양되었음
- 이처럼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수치를 정책에 사용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당장 정부가 발표한 올해 주택분양 목표인 46만 가구도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음
- 당장 정부가 올해 주택분양 물량을 46만 가구로 전망하면서 압도적인 공급으로 집 값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의심과 함께 지난해와 비슷한 결과를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
- 특히 올해 분양 계획에 사전청약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래 분양 물량을 미리 당겨쓴다는 점에서 현재 공급 계획에 넣는 게 옳은지도 제고할 필요성

◈ 홀대 받던 SOC, 경제 동력으로 위상 변화

○올해 정부가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민생 안정을 조기 실현하기 위해 SOC 투자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SOC사업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

<주요내용>

□ 현황

- 기획재정부는 올해 재정관리 6대 핵심사업군으로 △SOC 확충(28조원)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1조2000억원) △한국판 뉴딜(33조1000억원) △탄소중립 재정투자(11 조4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14조8000억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18조5000억원)을 선정

<재정 중점관리 6대 핵심사업군>

(단위: 원)

분야	핵심 사업군	관리규모	
-1 11 -1 -11	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18.5조	
민생경제 회복 뒷받침	② 일자리 창출 및 유지	14.8조	
47 860	③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28.0조	
, l = =1 =1 =1	④ 한국판 뉴딜	33.1조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⑤ 탄소중립 재정투자	11.4조	
112 1 H	⑥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2조	

- 앞서 기재부는 올 1분기 총 247조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1월 52조원 규모의 자금 배정으로 신속한 계약과 공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3월 중에는 2분기 예산으로 113조원을 배정하고선 조기집행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
- 특히 기획재정부가 SOC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관계기 관 협의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간다는 계획하에 제도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함
- SOC 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공공기관도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올해 SOC 투자 금액은 전년보다 2조 3000억원 늘어난 47조1000억원 규모에 이름
-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조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전력공사 7조8000 억원, 국가철도공단 6조2000억원임
- 한국판 뉴딜에도 올해 3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건설사업,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사업 등 그린 뉴딜에 2조8000억원, 전력설비 디지털화, ICT재해복구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혁신기반 등 디지털 뉴딜에 7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
- 재해재난 대비 설비 교체,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 강화, 노후설비 보강, 계획예방정 비공사 등6조80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도 본격 집행예정

□ 시사적

- 건설업계 입장에서 올해 정부가 연초부터 SOC 투자를 확대하며 적극적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SOC 투자를 홀대했던 분위기와 사뭇 달라 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
- 다만, 추후 SOC 예산의 이·불용이 없도록 관리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기조를 지속할 필요성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2.1.15(토)~2022.1.21(금)>

제707호 2022.1.21(금)

<건설산업 제도·정책 동향>

◈ 정부, '건설안전 관련 3법' 정비 추진

- ○최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 기반 마련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건설안전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이른바 '건설안전 관련 3법'의 정비를 최우선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안전관리 소홀 및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건설안전 관련 3법' 중 건축물관리법은 지난 1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건설안전특별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른 시일 내에 각각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건설안전 관련 3법'제·개정안 주요내용>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

□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자격기준 마련 및 해체심의

-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 의 작성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작성 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하고자 하며, 해 체공사 허가 과정에서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 건축위 원회를 통한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체허가를 받도록 함

□ 건축물 해체의 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 시공 시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등 해체허가 및 신고와 착공신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해체계획서 등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출한 사항들과 현장의 정합도를 제고하고, 사전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 강화

- 현행법상 임의규정인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결과 안 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하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 해체허가 대상 확대

-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변에 버스정류장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 를 받도록 해체허가 대상**이 확대
 - * 버스정류장, 역사출입구, 보행로(도로), 유동인구, 건축물 배치현황 등
 - ** (해체신고 대상) 연면적 500m2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3개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해체신고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

□ 해제공사 관계자의 안전기준 강화 및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의무화

- 현장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작업자의 안전기준이 신설되고 해체감리자 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 해체공사 관계자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며,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도 의무화

□ 해제공사감리자의 교육 의무화

-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은 현장중심형*으로 개선하고 교육시간도 확대(16시간→35시간)
 - *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및 현장사고 사례 등 교육, 교육내용 평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 (발주자 의무) 적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책정

-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

□ (시공자 의무)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자는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작 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

□ (감리자 의무) 안전규정 준수여부 확인 등

-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 중 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건설사업자 의무) 재해보험 가입 등

-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 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함

□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제재처분

-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 징금을 부과함

□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제재처분

-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 징금을 부과함
-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21.9.23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법안 -

□ 불법하도급에 따른 처벌대상자 확대

- 불법하도급 적발시 처벌대상을 하도급 관리의무를 하지 않은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

□ 수급인의 하도급 관리 의무 부여

-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

□ 하도급 제한 의무 위반자의 범위 확대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 급 참여제한 대상에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까지 포함

□ 불법 하도급한 원도급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 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10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 불법 하도급 대한 처벌수준 강화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 서 인명피해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
- 무등록하도급,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10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즉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 또는 10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

□ 불법 하도급 자진신고 시, 제재처분 감면

-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건설사업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을 면제하거 나 감면토록 함